

대법원 2024. 6. 17 선고 2024다222014(본소), 2024다222021(반소) 판결

[부당이득금반환 · 위약금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4. 6. 17 선고 2024다222014(본소), 2024다222021(반소)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24. 2. 6 선고 2023나209333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상고인

A

피고(반소원고), 상고인

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

담당변호사 김정규

판결 선고 2024. 6. 17.

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. 2. 6. 선고 2023나209333(본소), 209340(반소)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.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노정희, 대법관 이흥구, 주 심 대법관 오석준, 대법관 엄상필